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

2008. 7. 21(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정윤숙 의원 외 7인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8년 6월 30일
- 회부일자 : 2008년 7월 7일

다. 상정일자 :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08. 7. 14)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교육사회위원회 정윤숙 의원)

가. 제안이유

-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 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 바지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여성기업의 적용대상을 도내에 소재한 여성기업에 한하여 적용하기로 정함(안 제3조).
- 여성기업 지원의 제한(안 제4조)
 - 1) 여성기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여성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2) 지원 제한 기준의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함
-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입지지원·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협력네트워크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5조).
- 도지사는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연도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안 제8조)
 -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2)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으로 함.
 - 3)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연도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 도지사 및 투자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을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경영지도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0조).
- 도지사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전문위원 : 민병완)

-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도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로,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능력을 고취시키고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적 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새로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이 도내 여성기업 중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의 명확화,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연도별 효과적인 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례의 시행상 제기 되는 문제점과 미비점은 없는지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수정 이유

- 제정되는 조례안 중 조문 명확성과 원활한 시행을 하기 위함.

□ 수정 주요내용

- 안 제6조 중 “종합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함.
- 안 제7조제2항제1호 중 “종합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함.
- 안 제8조제3항 중 “회계과장”을 “행정국장”으로, 동조 제3항제2호 중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로, 동조 제6항 중 “담당하는 부서장으로”를 “담당하는 자”로 각각 수정함.
- 안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우대”를 각각 삭제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8. 7. 14

제 안 자 : 송은섭 의원외

□ 수정 이유

- 제정되는 조례안 중 조문 명확성과 원활한 시행을 하기 위함.

□ 수정 주요내용

- 안 제6조 중 “종합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한다.
- 안 제7조제2항제1호 중 “종합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한다.
- 안 제8조제3항 중 “회계과장”을 “행정국장”으로, 동조 제3항제2호 중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로, 동조 제6항 중 “담당하는 부서장으로”를 “담당하는 자”로 각각 수정 한다.
- 안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우대”를 각각 삭제함.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6조 중 “종합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한다.
- 안 제7조제2항제1호 중 “종합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한다.
- 안 제8조제3항 중 “회계과장”을 “행정국장”으로, 동조 제3항제2호 중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로, 동조 제6항 중 “담당하는 부서장으로”를 “담당하는 자”로 각각 수정 한다.
- 안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우대”를 각각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 제정안 | 수정안 |
|--|--|
|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제6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연도별 <u>종합계획</u> 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u>기본계획</u> 을 매년 수립..... |
| 제7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연도별 <u>종합계획</u> 수립에 관한 사항 | 제7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② 1. <u>기본계획</u> |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통상국장, 회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u>한국여성경제인협회</u> 에서 추천하는 자 1명 3. 여성기업인 대표 4. 경제관련 단체 임직원 5. 그 밖에 관련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② ③ <u>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u> 1. 2. <u>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u> 3. 4. 5. |

| 제 정 안 | 수 정 안 |
|---|---|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④ |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
| 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을 <u>담당하는 부서장으로</u> 한다. | ⑥ 담당하는 자로 ... |
| 제9조(지원사항) ① 도지사 및 투자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을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9조(지원사항) ① 도지사 및 투자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을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의 제품 구매비율과 구매액의 목표 설정시 <u>우대</u> |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의 제품 구매비율과 구매액의 목표 설정시 |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공동 계약시 참여 <u>우대</u>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공동 계약시 참여 |
|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계약의 방법 중 수의 계약 대상자 선정시 <u>우대</u> |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계약의 방법 중 수의 계약 대상자 선정시 |
| 4.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기금지원 대상자 선정 시 <u>우대</u> | 4.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기금지원 대상자 선정 시 |
| 5. 그 밖에 도 및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기업과 관련된 시책추진에 있어서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각종 시책 <u>우대</u> | 5. 그 밖에 도 및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기업과 관련된 시책추진에 있어서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각종 시책 |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 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2. “투자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충청북도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의 제한) ① 여성기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같은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지원 제한 기준과 방법 등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입지지원·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협력네트워크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연도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연도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에서 추천하는 자 1명
3. 여성기업인 대표
4. 경제관련 단체 임직원

5. 그 밖에 관련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자로 한다.
-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항) ① 도지사 및 투자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을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의 제품 구매비율과 구매액의 목표 설정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공동 계약시 참여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계약의 방법 중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시
4.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기금지원 대상자 선정시

5. 그 밖에 도 및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기업과 관련된 시책추진에 있어서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각종 시책

② 여성기업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
2. 여성기업인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제10조(여성기업 활동 촉진)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경영지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성기업, 단체는 미리 사업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 · 지도)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계약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기업 관련 단체가 도지사가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시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군 및 투자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발췌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라 함은 여성이 당해기업을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라 함은 기업의 임원으로서 당해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요청받는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5조 (여성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①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3.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여성기업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 및 여성기업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성기업의 정의) 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이하 "공동대표"라 한다)인 경우에는 여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남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로 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 ②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기준, 지명 절차 및 기준,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 (공동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의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중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또는 중소기업간의 공동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 구매액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과 구매액
2. 기관별·제품별 구매목표액
3.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액 중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의 제품 구매비율과 구매액
4.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목표비율과 구매액
5.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구매실적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 여부 검토 결과와 직접구매실적
3.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실적과 우선구매목표의
미달사유